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7. 13 선고 2021가단20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1. 피고 C에 대한 소 중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15.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7. 7. 접수 제248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2. 17. 접수 제57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지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6405), 법원은 2014. 2. 21. “E, D은 각자 원고에게 2013. 2. 27.부터 위 피고들이 목포시 F 대 439.8㎡의 점유를 종료하거나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78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3.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판결금에 의한 채권(청구금액 69,080,00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타채1773), 2020. 7.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다. 한편,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B 앞으로 ‘2020. 6. 26.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7. 7. 접수 제248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피고 C 앞으로 ‘2021.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2. 17. 접수 제57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6.경 D을 상대로 약 6,900만 원에 이르는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시가 3,162,885원)과 연 14,243,000원 정도의 소득밖에 없었는데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만으로도 6,900만 원에 이르러 무자력 상태였다. 그런데도 D은 2020. 6. 26. 자신의 아들인 피고 B에게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B은 2021. 2.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 및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각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 및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부모님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었던 토지로서, 모친 대신 피고 B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 모친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증여 당시 사해행위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을 상대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 B이 경제사정이 어렵다며 이 사건 부동산을 변제 명목으로 가져가라고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였을 뿐인바, D 또는 피고 B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 단

가. 원고 제출 증거, 이 법원의 목포시 및 목포세무서에 대한 각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D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바,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피고 B 및 전득자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라. 다만,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전득자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이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C에 대한 소 중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별지]

부동산 목록

전라남도 목포시 G 전 1699㎡ 중 330.5/1699 지분 끝.

